

【 5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3. 4. 11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조례개정준칙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 관련

- 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함(안 제4조제2항)
- ②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함(안 제5조)
- ③ 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을 완화함(안 제7조제2항)
- ④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군의 지원체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⑤ 수강료등의 정수·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10조)
- ⑥ 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수강료 등의 감면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 ⑦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안 제11조제5항)

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

- ①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7조제1항)
- ②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함(안 제17조제2항 내지 제6항)
- ③ 위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17조 제7항)
- ④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함
- 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0조)
- ⑥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함

다. 기타

- 동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주민자치 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에 변경등을 정함(부칙).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센터” 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단체” 라 함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읍·면별 자율적 운영
-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되, 읍·면별, 지역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읍·면장은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읍·면장은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 단체 또는 위원회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지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징수한다.

③수강료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④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계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위원장은 주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위원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장, 이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계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조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및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요구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고문은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외로에 이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결정이 된 경우
5.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장은 지자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미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을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제10조제3항 및 제5항)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료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월/1인당)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문화·취미, 교양강좌	2시간이하	15,000원이하	7,500원이하	7,500원이하	7,500원이하	실습 재료비는 별도임.
	4시간이하	2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6시간이하	25,000원이하	12,500원이하	12,500원이하	12,500원이하	
	8시간이상	30,000원이하	15,000원이하	15,000원이하	15,000원이하	
생활체육 등 (험 스)	1개월	2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 다만, 강좌개설시 전문강사(외국인강사, 지명도가 높은 강사 등) 초빙시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강료를 추가 조정하여 정수할 수 있다.

-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수행 허용

-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 가능

④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군의 지원체계 강화함(안 제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의 주체로 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의 전전한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주민자치위원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

⑤ 수강료등의 정수·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10조)

- 수강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정수권자를 명확히 함

-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수

- 수강료 등의 정수범위 및 요율은 군수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 “수강료”的 정수범위와 요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함.

* 사용료 등의 정수범위와 요율의 상한기준을 조례의 별표로 정함

-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

-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的 정수·관리·지출 등을 위해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

- “수강료”的 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함.

- 위원회는 “수강료”的 수입·지출내역을 번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반기 경과후 20일이내)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조례개정준칙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 관련

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함(안 제4조제2항)

- “은현문화의 집, 감악문화의 집”으로 불리는 명칭을 “은현면 주민자치센터, 남면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및 주민자치 센터 본래의 취지·목적 유지
- ※ 현재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1년이내에 명칭 변경

②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함(안 제5조)

- 주민자치센터 기능예시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 조정
- 문화·여가 프로그램중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 관련성이 커 지역내 상호 마찰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
-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③ 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을 완화함(안 제7조제2항)

⑥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수강료 등의 감면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

⑦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안 제11조제5항)

-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2002년 상반기 읍면별로 기가입)

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7조제1항)**

- 종전에는 위원수를 “15~30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 구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음.
-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 없음

②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함(안 제17조제2항 내지 제6항)

- 주민자치위원을 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
 -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장 대표, 주민 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
 -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당해 읍면 관할 구역소재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상 불가피한 경우 당해 군 소재 단체까지 확대 가능
 - 후보자는 2인 이상 복수추천을 받아 그 중 적격자를 위촉
 - 다만,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의 주 이용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

-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초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신규위촉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공개

③ 위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17조 제7항)

-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④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함

-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과 프로그램 직접 운영기능 부여
 - 프로그램의 직접운영(안 제7조제1항)
 - “수강료”의 징수범위·요율 등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결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장 명의로 수행(안 제10조제7항)
 -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 명의로 통보(안 제21조제2항)

-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시 지역사회진흥 및 주민자치 기능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안 제16조제3항)

-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
 -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함(안 제18조제4항)

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0조)

- 현재는 관할구역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 확대

- 해촉요건에 있어서도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해내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원의 책임요건 강화

⑥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함

- 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 금지,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원칙

등 계속 유지(안 제3조 및 안 제17조제4항)

- 군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안 제17조제1항)
-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안 제17조제7항)

다. 기타

- 동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주민자치 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에 변경등을 정함(부칙).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3. 3. 10 ~ 3. 29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

기타 참고사항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2002. 3. 7, 자제13101-141)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20, 99·8·31>

-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7條 (市·邑의 設置基準)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 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改正 95·8·4>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④削除 <99·8·31>

⑤市·邑의 設置에 의한 総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절화로 促進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運営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의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8>

1. 地方自治團體의 区域, 管轄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 位置 및 區域의 調整
 - 條例, 規則의 制定, 改廢 및 그 운영·管理
 - 下行政機關의 組織管理
 - 下行政機關 등 隸屬의 指導·監督

(午 112)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94·7·6, 95·7·1>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4·1,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left[(\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채}) \div \text{일반회계예산} \right] \times 100$$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이상일 것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른 지방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아니하고 관할 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별표 1) <개정 2000. 7.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관련)

· 구 분	시 · 도 사 무	시 · 군 · 자치구 사 무
1.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 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 에 관한 사 업	1)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2) 시 · 군 · 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 · 조경 · 지 도 및 조언	1) 주민복지증진사업계획의 수 립 · 시행 2) 시 · 군 · 자치구 단위 주민 복지시설의 운영 · 지원 3) 주민복지상담 4) 환경위생증진등 주민보건향 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 시설의 설 치 · 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배치등 기본계획의 수 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의 비용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의 비용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등의 설치 허가 및 등 시설의 운영지도
다. 생활곤궁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실시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 원 3) 시 · 군 · 자치구에 대한 생 활보호보조금 교부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 용 관리 5) 의료보호 진료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 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 관 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 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 업료지급, 장제보호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 자로부터의 보호비용 징수

(총 122)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p>7) 일반폐기물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 8)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도의 경우를 제외한다)</p>	<p>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등 1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공중용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의 설치·유지 관리</p>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p>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p>	<p>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관련 지방채의 발행</p>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등 농업	<p>1) 농업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조정</p>	<p>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p>

(추 122)

제3면 총무 제6장 자치지원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0. 9. 25]
조례 제1760호

개정 2000.11.13 조례 제176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느보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
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일컫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
간을 지자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읍·면별 등정은 당해 읍·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
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추1)

제3편 총무 제6장 자치지원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회의장, 일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경합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충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설치 등 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1회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른 차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투담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회비 등(이하 "경비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주))

제3편 총 두 제6장 자치지원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 ②경비 등의 정수범위의 요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③경비 등의 정수범위의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조(이등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동 차로서의 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증여 등을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
 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발달을 적극
 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
 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
 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보고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①제14조 제1항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각 행정기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로

제16조(제작) ①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1.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2. 주민의 권리와 책임과 함께 운영에 관한 기본

(주 1)

제3편 총무 제6장 자치지원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요구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 결정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30일내에 후임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충하고 일하는 전임자의 임무를引き继ぎ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하고 일시로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표를 제출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회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들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관하여 읍·면·동·리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 내용 또는 차장은 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주1)

제3면 총무 제6장 자치지원 양주군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버브상 등) 위원은 무드수 등 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읍·면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9. 25 조례 제1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군읍·면계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11. 13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1)